

의안번호	제 363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(안 제2조제5호)
- 증서의 형태와 규격 등은 도지사가 정함(안 제5조제1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“명예도민증서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“명예도민증서”라 한다) 수여 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외국과의 자매결연, 우호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
2.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
3.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
4.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도, 시·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
5.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증서수여) ① 명예도민증서의 형태와 규격, 문안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.

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<u>수여조례</u>	----- <u>수여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<u>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</u> (이하 “<u>명예도민증서</u>” 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수여대상) <u>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</u> <u>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외국과의 자매결연,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</u></p> <p>2. <u>장학재단 설립운영등 도민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</u></p> <p>3. <u>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</u></p>	<p>제2조(수여대상)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(이하 “<u>명예도민증서</u>” 라 한다) 수여 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외국과의 자매결연, 우호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</u></p> <p>2. <u>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</u></p> <p>3. <u>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중도, 시·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</p> <p>5. 도, 시·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온 자</p> <p>제5조(증서수여)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,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</p> <p>② 명예도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</p>	<p>4.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중도, 시·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</p> <p>5.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</p> <p>제5조(증서수여) ① 명예도민증서의 형태와 규격, 문안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.</p> <p>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</p>